

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(등록말소)

국세청 폐업사실 통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에 의거 행정처분(등록말소)하고 그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4. 24.

파 주 시



1. 공고내용

업체명 (대표자)	처분업종 (등록번호)	소재지	처분내용	처분사유	처분근거
한국설비	가스·난방공사업 (파주02-28-2-61)	경기도 파주시 아동로 19 (금촌동)	등록말소	국세청 폐업사실 확인	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
(주)내외	실내건축공사업 (파주2013-01-04)	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보광로 1336-40	등록말소	국세청 폐업사실 확인	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
중앙가스산업	가스·난방공사업 (파주24-하-02)	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로 65 (문산읍)	등록말소	국세청 폐업사실 확인	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
대정설비	가스·난방공사업 (파주09-27-2-01)	경기도 파주시 안개초길 3-21 (문발동)	등록말소	국세청 폐업사실 확인	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

2. 기타사항

가. 본 행정처분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에 의하여 건설산업 종합정보망 (KISCON) 및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.

나.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 및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.